

공탁법 기본서 2026년 대비 제5판 정오표

교재 197 페이지

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한편 가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치분채권자가 제공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가치분채무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4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제권이라 하더라도,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가치분채무자가 가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제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는 파산절차 외에서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없고....로 오타수정